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 차>

1.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환경부	작 성 자	이름	황원재
	담당부서 (과)	이차전지순환이용 지원단		직급	환경사무관
	국장	유승광		연락처	044-201-7399
	과장	배정한		이메일	hwj0145@mail.g o.kr

2024. 08. 12. 작성

정책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제 품군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2.규제조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3.위임법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4.09.25~2024.11.0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관련기술의 발전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점차 다양화하는 신규 전자제품을 자원순환과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해 재활용의 무대상에 포함시켜 국가 총 재활용량 제고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확대와 제품군 개편에 따라 재생원료 확보에 기반이 되는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의무생산자와 재활용업자가 지켜야할 재활용 방법과 기준을 정비함 ○ 부적정 처리로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거하고 재활용 용이성 및 환경성을 제고								
	7.규제내용	○ 모든 전자제품을 4개의 전기전자 제품군으로 분류하고 공통사항 및 제품군별 개별사항을 분류 ○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적용 ○ 폐전자제품 수집·운반·회수·인계 대상자 및 방법에 대해 구체화 ○ 재활용사업자의 화재, 폭발 등의 사고 발생 예방 조치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자 : 재활용업체 60여개소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재활용업체</td><td>60여개소</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재활용업체	60여개소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재활용업체	60여개소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재활용 방법 및 기준 현실화, 구체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 제품 등에 대한 대응, 관리 효율 증대 ○ 제품군 축소(5→4개)에 따른 계량 등 증빙서류 간소화로 규제 완화 ○ 재활용사업자의 화재, 폭발 등의 사고 발생 저감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1,147.73	8,312.28	-7,164.55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147.73	8,312.28	-1,033.26		
	15.규제정비 계획	- -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제5조 관련)				[별표 1]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제5조 관련)	
제품군	재활용의 방법	재활용의 기준		1. 공통사항	
		공통 기준	제품군별 기준	가. 폐전기·폐전자제품은 재활용의무생산자, 판매업자, 공제조합이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수집·운반, 회수·인계 할 수 있다(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1. 온도 교환 기기 (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재사용 가능한 부품을 재사용하거나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폐전기·폐전자제품인 색회로판(PCBs)의 유가금속(有價金屬) 등을 안전하게 재활용해야 한다.	가. 염화불화탄소(CFC) 등 영 제15조의3 각 호의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을 별표 1의2의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의 회수·분리·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회수·분리·보관 및 처리해야 한다.	나. 폐전기·폐전자제품은 해체·선별·압축·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재사용 가능한 부품을 재사용하거나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2. 디스플레이 기기 (100cm ²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			나.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 폐전기·폐전자제품 인쇄회로기판(PCBs) 등의 유가금속(有價金屬) 등을 안전하게 재활용해야 한다.	
3. 통신·사무 기기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 개별사항	
4. 일반 전기·전자 제품			가. 이동전화단말기의 전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7호의 전지류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나.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품군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가. 온도 교환 기기 등	1) 염화불화탄소(CFC) 등 영 제15조의3 각 호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별표 1의2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분리·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회수·분리·보관 및 처리해야 한다. 2)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가. 이동전화단말기의 전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7호의 전지류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나. 디스플레이 기기 (100cm ²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나.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 태양광 패널	1)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한 태양광 패널의 셀(Cell) 등에 포함된 중금속(6가 크롬, 구리, 카드뮴, 납, 비소, 수은으로 한정한다)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기준 미만으로 관리해야 한다. 2)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현행			개정안	
5. 태양광 패널	해체·선별·파쇄 등의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재사용 가능부품을 재사용하거나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가.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한 태양광 패널의 셀(Cell) 등에 포함된 중금속(크롬, 6가크롬, 구리, 카드뮴, 납, 비소, 수은으로 한정한다)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기준 미만으로 관리해야 한다. 나.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라. 일반 전기·전자제품	1) 고온·화기·직사광선·수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폐기물의 유출·화재·폭발 등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이동전화단말기, 통신·사무기기는 80퍼센트 이상, 그 밖의 일반 전기·전자제품은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재 50개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5개 제품군으로 분류하여 회수·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적정 재활용여부를 관리하고 있으나
 - 대상품목이 전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품군별 대상품목명(名)이 삭제되어 기존의 제품군별 재활용방법 및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움
 - 또한, 새로운 형태의 품목 및 기존품목의 형태·특성이 변화하고 제품군이 조정(5→4개)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5개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운영
	내용	5개 제품군의 대상품목명에 따라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적용
규제대안1	대안명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으로 재활용 방법과 기준 운영
	내용	4개 제품군(통신·사무기기를 일반 전기·전자제품에 통합)에 대해 일반품목 사항(공통)과 특정품목 사항(개별)으로 구분하여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적용
규제대안2	대안명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으로 재활용 방법과 기준 운영
	내용	3개 제품군(디스플레이기기 및 통신·사무기기를 일반 전기·전자제품에 통합)에 대해 일반품목 사항(공통)과 특정품목 사항(개별)으로 구분하여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적용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재활용업체의 제품군 분류 혼동	- 대상품목명 삭제로 기존 제품(50개)

	방지	및 신규품목에 대한 제품군 분류 혼란 발생 - 5개 제품군별 의무이행에 대한 증빙 등 재활용업체 업무 및 비용 부담 - 새로운 형태의 제품, 신규품목 등에 대한 인체 및 환경 위해서 적절 관리 불가, 사회적·환경성 피해 노출 발생(화재 등)
규제대안1	- 새로운 형태 제품 출시, 신규품목 등에 적용가능한 재활용방법 및 기준 마련을 통해 인체 및 환경 위해 최소화 - 제품군 축소로 재활용업체 업무 및 비용 부담 감소	- 제품군 변화에 따른 초기 재활용업체 업무 진행에 혼선
규제대안2	- 새로운 형태 제품 출시, 신규품목 등에 적용가능한 재활용방법 및 기준 마련을 통해 인체 및 환경 위해 최소화 - 제품군 축소로 재활용업체 업무 및 비용 부담 감소	- 제품군 변화에 따른 초기 재활용업체 업무 진행에 혼선 - CRT(Cathode-Ray Tube)형 모니터 미분리로 재활용 체계 혼선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가전제품 재활용공제조합 (이순환거버넌스)	- '24.4.17, 환경부, 업무회의	- 일부 일반전기전자제품(냉장고, 러닝머신, 전기안마기)을 온도교환기기군 중분류로 조정 요청 - (사유)온도교환기기와 회수 특성이 동일하나 제품군 분리로 별도 관리에 따른 활동 및 비용 발생	- 반영
생산자(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 '24.5.28, 대전, 간담회 - '24.5.30, 서울, 간담회	- 일부 일반전기전자제품(냉장고, 러닝머신, 전기안마기)을 온도교환기기군 중분류로 조정 요청 - (사유)온도교환기기와 회수 특성이 동일하나 제품군 분리로 별도 관리에 따른 활동 및 비용 발생	- 반영
재활용업계	- '24.7.25, 서울역 인근, 이해관계자 간담회	- 화재, 폭발 등의 사고에 대한 기준 마련 요청	- 반영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공통 사항)** 제1호나목의 해체·압축 등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재사용가능 부품을 재사용하거나 소재별로 분리, 재활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나**,
 - 폐전기·폐전자제품 수집·운반·회수·인계 대상자 구체화(제1호가목)
 - 기존 폐전기·폐전자제품 내 인쇄회로기판 외 유가금속에 대한 안전한 재활용 설정(제1호다목)
- **(개별 사항)** 재활용 특성이 동일한 통신사무기기군과 일반전기·전자제품을 통합하고(라. 일반전기·전자제품)
 - 유출, 화재, 폭발 등의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 근거 마련
- **(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별표 5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3. 규제목표

- 회수·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이 전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재활용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품목은 공통사항으로, 제품특성이 상이한 품목은 개별사항으로 분류하여** 효율적, 합리적 관리하고자 함
- 회수·재활용 특성이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군 조정(축소)을 통해 재활용사업체의 비용 부담 완화
- 유출, 화재, 폭발 등의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 근거 마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제품군 재분류(축소) 및 재활용 방법 및 기준도 분류에 맞게 재설정
 - － 제품군별 재활용 방법과 기준은 폐가전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고 재활용률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기준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
-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
-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
-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없음
-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전기·전자제품군별 적정 재활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으로, 적정 재활용 이행과 재활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존속되어야 함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규제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않음
유연한 분류 체계		개념이나 범위를 유연하게 분류하지 않음
네거티브 리스트		네거티브 리스트에 해당하지 않음
사후 평가관리		사후 평가·관리를 도입하지 않음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EU, 일본의 의무대상 제품(군)별 재활용률 비교 >

EU WEEE

WEEE Directive(2012/19/EU)

제품군별 재활용률 목표

제품군(category) (2018.08.15.~)	재활용률(recycle) (2018.08.15.~)
1. 온도교환장비	80%
2. 스크린모니터면적 100cm ² 이상 스크린이 설치된 장비	70%
3. 램프	80%
4. 대형장비(외부둘레 어느 하나라도 50cm ² 이상)	80%
5. 소형장비(외부둘레 모두 50cm ² 이하)	55%
6. 소형IT·전자통신장비(외부둘레 모두50cm ² 이하)	55%

※ 제2조(Article 2) 범위 및 부록3(Annex III), 부록4(Annex IV)

처리방법 및 기준(부록7)

1. 제거대상 물질

폴리염화비페닐(PCB), 폴리염화터페닐(PCT), 배터리, 인쇄회로기판(면적10cm²이상), 플라스틱이 함유된 브롬처리된 내연재, 음극선관, 염화불화탄소, 수소화염화불화탄소, 수소화불화탄소, 탄화수소 등

2. 제거대상 물질 처리기준

발포체와 냉장회로에 포함된 물질과 같이 오존을 파괴하거나 온난화지수 15 이상인 기체를 포함하는 장비: 기체는 적절하게 추출 또는 처리되어야 한다. 오존을 파괴하는 기체는 규정 (EC) No 1005/2009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처리작업시 기술적 요구사항(부록8)

저울, 유출물 수거시설, 배터리 등과 같은 유해폐기물 보관용기, 수처리시설 등.

일 본

특정가정용기기 재상품화법(2001.4)

목표 재상품화 비율

품목		목표 (2015.4~)	특정 처리 기준
에어컨		80% 이상	냉매 회수/적정처리
텔레비전	브라운관식	55% 이상	—
	액정·플라즈마식	74% 이상	—
냉장고·냉동고		70% 이상	냉매가스와 우레탄 회수/적정처리
세탁기·의류건조기		82% 이상	냉매 회수/적정처리

컴퓨터리사이클법(2001.4)

목표 재상품화 비율

품목	목표
데스크탑	50% 이상
노트북	20% 이상
모니터	55% 이상

○ 타법사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고시에서 재활용의무율을 통해 목표 관리중임

품 목		2024년도 재활용의무율	
금속캔	철캔	0.854	
	알루미늄캔	0.807	
유리병		0.728	
종이팩	일반팩	0.293	
	멸균팩	0.146	
합성수지 포장재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병	단일 무색	0.768
		단일 유색	0.728
		복합재질	0.894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틸렌페이퍼 제외)		0.871
	단일재질 폴리스틸렌페이퍼		0.532
	단일·복합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0.408
	기타 합성수지	용기류·트레이 단일재질	0.893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	0.860
	운할유용기		0.826
운할유		0.765	
1회용 비닐장갑		0.860	
타이어		0.800	
형광등		0.969	
발광다이오드 (LED) 조명	전구형	0.120	
	직관형	0.120	
수산물 양식용부자		0.129	
산업용 필름		0.636	
교체용 정수기 필터		0.799	
안전망		0.383	
어망		0.410	
로프		0.231	
폴리에틸렌관		0.102	
폴리염화비닐(PVC)제품		0.101	
폴리프로필렌 재질 생활용품		0.518	
파렛트		0.146	
플라스틱 운반상자		0.205	
창틀·문틀		0.154	
바닥재		0.225	
건축용 단열재		0.097	
전력·통신선		0.175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0.502	
전지류	수은전지	0.600	
	산화은전지	0.462	
	리튬전지	0.463	
	니켈·카드뮴전지	0.486	
	망간전지·알칼리 망간전지	0.338	
	니켈수소전지	0.169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0.604	
김발장		0.807	

품 목		2024년도 재활용의무율
소주	표준용기	0.871
	비표준용기	0.805
맥주		0.810
소주, 맥주를 제외한 기타 주류		0.711
음료류		0.889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0.800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별표6에서 재활용방법과 기준을 정하여 운영중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으로 재활용 방법과 기준 운영>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7,164.55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2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으로 재활용 방법과 기준 운영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147.73	8,312.28	-7,164.55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1,147.73	8,312.28	-7,164.55
기업순비용		-7,164.55	연간균등순비용	-1,033.26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2023년 적극행정을 통해 전기·전자제품 전품목에 대해 이미 회수·재활용실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어 피규제자(제조·수입업자, 재활용사업자)의 준수는 이미 이행 중
- 신규품목에 대한 피규제자(제조·수입업자 등)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에서 회수·재활용의무 대상으로 변경됨으로 이행에 대해 준수 가능
- 최근 전지로 인한 화재, 폭발 등으로 사고예방 조치 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피규제자(재활용사업자)의 기준 마련 요청 중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2023년 적극행정을 통해 전기·전자제품 전품목에 대해 이미 회수·재활용실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어 행정적 집행 기 시행 중

○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피규제대상자의 비용으로 운영)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가전제품 재활용공제조합 업무협약(2024.4.17)
- 전 품목 확대를 위한 의견수렴 1차 간담회(2024.5.28)
- 전 품목 확대를 위한 의견수렴 2차 간담회(2024.5.30)
- 이해관계자(재활용업체) 간담회(2024.7.25)

2. 향후 평가계획

해당없음

3. 규제 정비계획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	—	—	—

4. 종합결론

- 현재 회수·인계·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이 50종에서 전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상품목명(名)이 삭제되어 기존의 제품군별 재활용방법 및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며,
- 새로운 형태의 품목 및 기존품목의 형태·특성이 변화함에 따라 재활용 업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품군이 조정(5→4개) 및 재활용 방법과 기준이 개선이 필요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2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으로 재활용 방법과 기준 운영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147.73	8,312.28	-7,164.55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1,147.73	8,312.28	-7,164.55
기업순비용		-7,164.55	연간균등순비용	-1,033.26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으로 재활용 방법과 기준 운영>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사업자				
활동제목	권장 시설 추가 구비액				
비용항목	운영				
비용	1,147,737,197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정률				
산식	권장 시설 구비 비용 × 대상 사업자 수(4300000*60)				
근거설명	☐ 권장 시설 추가 구비액 : 258백만원 = 4,300천원 × 60개사* * 한국환경공단에 실적을 등록하는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사업장 수				
	구분	장비명	수량(개)	단가(천원/개)	비용(천원)
	작업자보호	안전장비세트 (장갑, 장화, 절연모, 절연복)	4	500	2,000
		화학용마스크	4	50	200
	배터리보관/관리 및 소방장비 (배터리보관시 권장사항)	전기화재소화기 (전기화재(C)형)	10	200	2,000
		적외선온도측정기	1	100	100
	합계				4,300
	※ 자동화재탐지설비, 소방용수설비 등 일반적인 사고안전 설비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기 설치 중				
	※ 출처 : 「전기차 배터리 안전회수 및 해체·보관 매뉴얼」('19.3, 환경부, 제주TP) 전기차 전문회수 및 해체업자 권장 시설요건 중 전기전자제품 해당 설비 적용				

☐ 직접편익

(정량)영향집단명	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사업자				
활동제목	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 사업장 손실 예방액				
편익항목	손실 예방액				
편익	8,312,286,463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정률				

산식	소방활동 1건당 손실예방액 × 화재 발생 가능 건수 (1354000000*1.38)
근거설명	□ 손실 예방액 : 1,625백만원 【산식】 (소방활동 1건당 손실예방액* 1,354백만원) × (화재 발생 가능 건수 1.38건**) * 출처 : 소방활동 1건당 손실예방액 : 소방활동 서비스로 인한 사회경제 적 효과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화재 발생 가능 건수 1.38건 = 폐기물 관련 시설 화재 비율 2.3%(국 가화재정보시스템)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시설(한국환경공단에 실 적을 등록하는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사업장 60개소) － 사고 예방에 따른 인명피해 경감 0.1명/년